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김정호·김성환·민홍철

박 정・신영대・어기구

이훈기 • 전재수 • 정성호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」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행정안전 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「국가재정법」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 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79호)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「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